<별지 제5호 서식> (제9조 관련)

계약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

<table>
<tr><td>심의번호</td><td>2020-03</td><td>심의방법</td><td>서면</td><td>발주부서</td><td>공공자전거운영처</td></tr>
<tr><td>안 건 명</td><td colspan="5">서울형 공공자전거용 거치대 구매설치 및 안내간판 설치</td></tr>
<tr><td>발 주
부서안
(원 안)</td><td colspan="5">○ 계약방법 : 제한경쟁입찰
○ 입찰참여자격
-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검사가 완료된 최근 10년간 자전거 거치대 누적건으로 3,330대 (1/3)이상 제작.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</td></tr>
<tr><td>의결내용</td><td colspan="5"><u>○ 수정의결</u>

1. 분할발주 검토
- 본 건의 경우, 물품 제작에 해당할 뿐 아니라 ‘설치’의 측면에서 보면 용역 및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어, 물품, 용역,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사업으로 간주되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. (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1절 10. 물품 . 용역 . 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)

2. 제한경쟁입찰 계약방법의 적정성 검토
- 본 건의 과업은 ‘제작구매’라고 되어있어 제조 또는 납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, 본 건 제한경쟁입찰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(이하, ‘지방계약법’이라 함)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3호 ‘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~ 계약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’에 따른 실적제한으로 보이므로, 실적제한을 하기 위해서는 ‘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’ ‘제조’입찰이어야 함.
- 위 근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‘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’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판단과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</td></tr>
</table>

	대비하여 그에 대한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, ‘구매’와 ‘제작’을 혼용하지 않고 물품‘제조’의 경우로 한하여 입찰을 진행해야 함. 3. 과업지시서 수정 검토 - ‘거치대 및 안내간판 설치개소수는 민원 및 기타 사유로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’는 문구 추가

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함

2020년 04월 24일

서울시설공단 계약심의위원회

위원장 : 윤 성 철

위 원 : 구 자 필　　　위 원 : 박 동 욱

위 원 : 김 호 정　　　위 원 : 차 경 희